

평창군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평창군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09. 5.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제안 이유

- 현재 운용중인 각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 평창군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한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평창군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제6조)
- 다. 평창군통합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제15조)

참고사항

- 가. 조례안 : 붙임
- 나. 관계법령 발체 : 붙임
- 다.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 라. 입법예고 : '09. 3. 16 ~ 4. 6(20일간) 실시,
제출된 의견 없음

평창군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기금(이하 “각 기금”이라 한다)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평창군 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관리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관리기금”이란 각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2. “보유자금”이란 각 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금(예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한다.

제4조(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5조(통합관리기금의 재원) 통합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통합관리기금 용자금의 상환수입금 및 이자수입금
4. 기타 수입금

제6조(통합관리기금의 용도) 통합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군의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용자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용자
3. 예탁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통합관리기금의 운용 등에 필요한 경비

제7조(통합관리기금의 운용·관리) ①군수는 통합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총괄기금관리관을 두되, 총괄기금관리관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②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거나 군수의 승인을 얻어 기금운용전반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③통합관리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④군수는 통합관리기금의 보유자금을 군의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2항에 의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군수는 통합관리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감사실장
2. 기금출납원 : 예산담당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의거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각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기금별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한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기금별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총괄기금관리관이 되고, 위원은 군수가 기금관련 민간전문가 4명을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 및 재난업무와 관련된 실·과·소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관리기금 및 통합하여 관리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2. 통합관리기금 및 통합하여 관리하는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3. 예탁금과 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 결정

4. 기타 군수가 통합관리기금 및 통합하여 관리하는 기금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는 기금”이란 제8조제1항에 의거 기금별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기금을 말한다.

제11조(통합관리기금에의 예탁의무) ①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서 “여유자금”이란 각 기금의 보유자금 중 기금의 운용 및 목적 수행을 위한 자금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제12조(예탁금의 이자)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기금에 대하여는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운용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탁하는 기금의 특성과 통합관리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3조(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총괄기금관리관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평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결산 및 보고) ①총괄기금관리관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총괄기금관리관은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를 결산검사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영)

①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용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 관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①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영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②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 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③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운영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 (금고업무의 일부대행)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 또는 신용사업을 행하는 당해 금융기관의 조합원인 법인으로 하여금 금고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하도록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